##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81 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전진숙・김 윤・임호선

이수진 • 남인순 • 서영석

이인영 · 김정호 · 김윤덕

김원이 · 허종식 · 이훈기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변호사·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,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3

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광고) ① (생 략)	제23조(광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	②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	
하여서는 아니 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
	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
	<u>광고</u>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 •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